

고 발 장(수사의뢰서)

- 고 발 인
1. 참여연대
 2.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피고발인 김기춘 등

2016. 12. 2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

전화 : 02-723-5300, 팩스 : 02-6919-2004

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 2층 (정양빌딩)

대표자 상임운영위원 전명선, 박래군

전화 : 02-2285-0416, 팩스 : 02-722-0416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대표자 회장 정연순

전화 : 02-522-7284, 팩스 : 02-522-7285

고발대리인

1. 오지원 변호사 (나란법률사무소)

전화 : □□□-□□□□-□□□□

피고발인

1.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2. 성명불상자

고 발 취 지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하여 드러난 내용은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인터넷 글 등에 대해서는 응징, 보

복, 형사처벌 등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집요하게 추적하여 불이익을 주고 형사처벌을 시도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인사의 사생활을 사찰하여 사퇴 등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드러난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고발하거나 사퇴를 압박하였습니다. 마치 전제군주제처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드러내어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하고, 때로는 집요한 길들이기도 시도하는 등 민주공화제의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전제적 정치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분립을 통해 상호 권력을 견제하여 전제권력의 출현을 막는 삼권분립의 원리가 훼손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충성문화와 줄서기 문화가 뿌리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충성하는 자와 아닌 자 사이에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비선실세 등이 국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보는 자와 불이익을 입는 자들이 행정기관 내부는 물론 기업경영에 까지 나타나게 되자 충성문화, 줄서기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공적인 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가 희미해지고 위법·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행정문화가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축으로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작정치의 청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파헤쳐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다시는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제324조 강요죄, 제156조 무고죄,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목 차	
1. 이 사건 업무일지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5
가.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 업무일지	5
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	6
(1) 재직기간과 이 사건 업무일지의 작성기간이 거의 일치함	6
(2) 피고발인 김기춘의 지위와 기재내용, 당시 전후상황이 일치하는 사정 등	7
2. 형법상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	13
가. 죄책에 관한 법리적 검토	13
(1) 직권남용	13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14
(3) 강요죄	15
(4) 무고죄	16
(5) 국정원법 위반	16
나. 언론 및 문화계 불법부당 통제	17
(1) KBS 인사권 행사에 관여, 이사회 이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업무방해	17
(2) 홍성담 그림 게시 관련 부당 방해	22
(3) ‘다이빙벨’ 상영 탄압	24
(4) 세월호 보도통제	25
다. 언론에 대한 사찰·공작	26
(1) 업무일지 관련 내용	26
(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과 응징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찰과 공작	26
(나) 세계일보 공격 관련	27
(다) 일요신문과 시사저널의 ‘만만회’ 보도에 대한 응징	29
(라)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보도와 산케이 지국장 기소공작	29
(2) 구체적인 혐의	34
라. 세월호 관련 공작	35
(1) 세월호특별법 관련	35
(2) 세월호 피해자들 관련	41

(3) 감사원 보고 관련	46
마.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47
(1) 업무일지 관련 내용	47
(가) 법원 길들이기	47
(나)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48
(다) 박근혜 정권 실정과 관련된 사건에 비판적인 판사들 업무배제 시도	48
(라)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장청구 등에 활용	49
(마) 보수단체, 보수인사를 통한 재판 영향력 행사	50
(2) 구체적인 혐의	50
바.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51
(1) 업무일지 관련 내용	51
(가) 국정원이 장, 차관 공공기관장 신원검증과 공직기강 사찰	51
(나) 정치인 사찰: 총리실 TF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정치인 비리 사찰 지시	51
(다)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국정원이 사찰하도록 청와대에서 지시	52
(2) 구체적인 혐의	53
3. 결 론	54

1. 이 사건 업무일지¹⁾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가.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 업무일지

대법원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2015. 0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

1) 언론에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비망록이라고 칭했으나 그 법적 성격은 업무일지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일지라고 칭합니다.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업무일지 내용을 보면 이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하 ‘고인’이라고 합니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내용, 추진방향, 추진내용 등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세부 내용을 당시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각 기재의 일자와 내용이 일자 무렵의 객관적 전후 상황과 일치하는바,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

피고발인 김기춘은 2016. 12. 7.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이 사건 업무일지 기재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은 그 업무일지를 본 적도 없고 청와대 수석회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회의 중 메모하다 보면 작성자의 주관적 생각도 가미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YTN 2016. 12. 7. 자 기사출력물²⁾).

그러나 업무일지 작성 시기, 내용, 당시 객관적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업무일지 각 기재내용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재직기간과 이 사건 업무일지의 작성기간이 거의 일치함

고인은 2014. 6. 12.부터 2015. 1. 10.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이라고 합니다)으로 재직하면서 피고발인 김기춘의 지시, 추진상황,

2) YTN 뉴스 http://www.ytn.co.kr/_ln/0101_201612071125010293

보고받은 내용 등을 꼼꼼하게 메모하여 이 사건 업무일지로 남긴바, 이 사건 업무 일지는 2014. 6. 14.부터 시작하여 2015. 1. 9.까지 작성되어 있고 이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증 제2호증 위키피디아 출력물³⁾, 증 제3호증 미디어오늘 2016. 12. 7. 자 기사출력물⁴⁾).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피고발인 김기춘의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신빙성 역시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 김기춘의 지위와 기재내용, 당시 전후상황이 일치하는 사정 등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각 일자의 상황에 맞는 각종 지시사항들과 고인이 챙겨야 할 현안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발인 김기춘은 2013. 8. 5.부터 2015. 2. 22.까지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⁵⁾ 및 대통령비서실 직제(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⁶⁾에 따른 대통령 비서실장(장관급 정무직)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 사무를 처리하고, 민정수석실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4비서관 및 10수석실)을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즉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제상 고인과 같은 각 수석에게 일상적으로 직접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는 피고발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뿐입니다.

3)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EB%B9%84%EC%84%9C%EC%8B%A4_%EC%88%98%EC%84%9D%EB%B9%84%EC%84%9C%EA%B4%80

4) 미디어오늘 기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no=133764>

5)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6)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러한 직제와 청와대 조직 문화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업무일지 내용에 대해 고인이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업무를 처리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고, 이 사건 업무일지를 피고발인 김기춘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일지 내용대로 피고발인 김기춘이 지시를 하고 추진방향이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서두에 ‘장(長)’ 이라고 기재한 부분 중 2014. 6. 14. 자 “신임수석 환영, 업무공백 없도록”, 같은 해 9. 14. 자 “VIP일정 결심 요상건은 室長의 사전 협의 요 → 전후 보고바람. ex. 아시안게임선수촌 방문”, 같은 해 10. 10. 자 “VIP 보고 → 반드시 실장에게도 송신토록. VIP 앞 민원 - 책임관리 - 책임자 지정 후 끝까지 밀착 파악 - 맨투맨”, 같은 해 10. 21. 자 “VIP 결심 요하는 사항 포함 보고서 - 실장과 사전 조율 거치도록” 등 이 사건 업무일지 곳곳에는 비서

실장만이 할 수 있는 지시사항 및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 일정과 그에 맞는 업무 수행 내용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한 것들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당시의 전후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하는바, 이 사건 업무일지대로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고 청와대의 주요 업무들이 행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메모일 (2014년)	내용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실제 상황
6. 14.	<p>長 1. 신입수석 환영. 업무공백 없도록</p> <p>2. VIP 해외순방기간 중 마음가짐 다지기 위한 직원 조회(16일 17시). 국정, 총무</p> <p><u>이념 대결 속에서 생활 - 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u></p> <p>회의 내용 발설, 누설치 않도록 / 기미독립선언문(時), 국민헌법가치 수호, 선진국가 건설-진리, 양심</p> <p><u>분기 필요 - 읽는 기분</u></p> <p><u>가치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u></p> <p><u>시장 vs 사회 →택일 회색지대 無</u></p> <p><u>강철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u></p>	<p>2014. 6. 12.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재임 시작하였고, 같은 해 6. 16.부터 6. 21.까지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증제4호증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출력물7).</p>
6. 15.	<p>長 1. VIP 순방중 빈틈 없이 근무</p> <p>2. 전교조 재판 - 6/19 재판 중요</p> <p>-승소시 강력한 執行了</p> <p>-(전교조) 교육감 비협조 예상</p> <p>YS때 노동법강조(제3자 개입금지)”</p>	<p>2014. 6. 19.,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증 제5호증 한겨레 2014. 6. 19. 자 기사출력물8).</p>
6. 16.	<p>長 VIP 순방기간 중 긴장, 빈틈 없이 업무수행</p> <p>청문회 대처</p> <p>-교수 등 미숙 집요, 인격모독적 추궁, 흥분</p> <p>-지도, 보좌토록”</p>	<p>2014. 6.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장관 지명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달 24. 역사관 논란으로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청문회 전 사퇴하여 개최되지 못 함(증 제6호증 한겨레 2014. 6. 24.</p>

		<p>자 기사출력물9).</p> <p>2014. 7. 7.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같은 달 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같은 달 9.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같은 달 10.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개최(증 제7호증 아시아경제 2014. 7. 10. 자 기사출력물10), 이 중 최양희, 정종섭, 이기권, 김명수 후보자는 대학 교수 출신).</p>
6. 18.	<p>국방</p> <p>아시안게임 -단일기, 단일팀, 공동입장 불가, -9,19~10.4</p>	<p>2014. 6. 18. 정부는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 입장 재확인(증 제8호증 서울신문 2014. 6. 18. 자 기사출력물11).</p>
6. 20.	<p>삼성그룹 승계과정 - 모니터링</p>	<p>2014.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증 제9호증 위클리 오늘 2014. 6. 22. 자 기사출력물12).</p>
6. 24.	<p>長 表 주요 의혹-부동산 몇억 빛 자료</p> <p>장관-전교조 비노조 홍보-비노조가처분 실요-불법 집단행동</p>	<p>2014. 6. 23.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범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p>
7. 5.	<p>박지원 항소심 - 공소유지 대책 수립. 박사모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 검토</p>	<p>2014. 7. 21. 친박성향 시민단체 새마을포럼이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발(증 제10호증 문화일보 2014. 7. 21. 자 기사출력물13).</p>
7. 23.	<p>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선처 탄원 (8/11 선고)</p> <p>-염수정, 자승, 김희정 대주교 김영주 목사 (7/17)</p>	<p>2014. 7. 27. 언론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중단 최고위 성직자들(염수</p>

	-국가전복 기도세력에 대한 선처 탄원은 곤란. 교황 관련 각종 지원에 불구. 기록으로 남겨야”	정, 자승, 김희정, 김영주)이 재판부에 일제히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고 보도(증 제11호증 YTN 2014. 7. 27. 자 기사출력물14). 해당 사건(서울고법 2014노762)을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해본 결과, 2014. 7. 23. 전에 제출된 탄원서는 단 1건 뿐이고, 이는 2014. 7. 14. 제출되었으며, 제출인이 “천 00000000000”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천주교’로 시작하는 단어로 추정됨(증 제12호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15).
8. 6.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 서울자유교원조합(서희식) --> 조희연 보호정황. 배옥병(검) 송병준(남편, 감사): 시민단체 고발.	2014. 8. 7. 보수단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식)이 ‘박원순 시장에게 농약 급식의 책임을 물러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기획위원장 배모 씨와 그의 남편이자 검사관인 송모 씨를 수사 의뢰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현재 사이트 폐쇄, 증 제13호증 논객넷 게시글 출력물16).
8. 9.	하반기 대구 방문 VIP - 창조경제	2014. 9. 15.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를 방문, 지역 창조경제(하반기 키워드) 확산을 위한 행보 본격화(증 제14호증 연합뉴스 2014. 9. 15. 자 기사출력물17).
8. 22.	VIP 부산	2014. 8. 22. 박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 국제금융센터(BIFC) 준공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증 제15호증 연합뉴스 2014. 8. 22. 자 기사출력물18).
10. 10.	순방기간 중 10:30까지 일일 동행 보고	2014. 10. 14.부터 같은 해 10. 18. 박 대통령 ASEM 참석 및 이탈리아 방문(증 제16호증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이지 출력물 ¹⁹⁾).
10. 29.	長 VIP 시정연설 - 홍보 후속대책	2014. 10. 29. 박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함(증 제17호증 뉴시스 2014. 10. 29. 자 기사출력물 ²⁰⁾).
11. 17.	長 순방 업적 홍보 각 부처 홍보관 활동 미비 BH의 독려 要 장관들의 열의도 예전만 못해, 수석들의 책임감, 열의가 긴요, 홍보자료 만들어 전 공보관에 배포. 장관 질책 독려, 조치 계속 follow-up 내각이 頷 ²¹⁾ 뜻 받들어 뛰도록 독려하는 것이 비서실 직무	2014. 11. 9.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박 대통령이 APEC · EAS · ASEAN+3 · G20 정상회의 참석(증 제18호증 대한민국 청와대 출력물 ²²⁾)
11. 20.	VIP 압수 수색 - 인터넷 여론 엄벌 ↑	2014. 11. 17. 검찰 사이버 전담팀이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헐담을 해온 한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증 제19호증 JTBC 2014. 11. 20. 자 기사출력물 ²³⁾).

7) 대한민국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4/trip2014.php?srh\[smtt_view_mode\]=detail&srh\[smtt_seq\]=23&srh\[tab_no\]=a](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4/trip2014.php?srh[smtt_view_mode]=detail&srh[smtt_seq]=23&srh[tab_no]=a)

8)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43149.html>

9)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43815.html>

10) 아시아경제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914112962080>

11) 서울신문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618010020#csidx3c268d204c4559e94842346f3f30dff>

12) 위클리 오늘 기사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8>

13) 문화일보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2101070823068002>

14) YTN 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407270849130952

1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16) '논객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해당 보도자료를 퍼와서 게시한 글

<http://tb.nongak.net/board/index.html?id=nca123&smode=both&skey=%C0%DA%C0%AF%B1%B3%BF%F8&page=4&no=15190>

17)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18338>

18)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81347>

19) 대한민국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4/trip2014.php?srh\[smtt_view_mode\]=detail&srh\[smtt_seq\]=](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4/trip2014.php?srh[smtt_view_mode]=detail&srh[smtt_seq]=)

2. 형법상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피고발인 김기춘 등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적으로 공작정치를 꾀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 민변, 영화예술계 등을 광범위하게 탄압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들의 모의, 기획, 실행 등에 가담했던 피고발인 김기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형법상 아래 범죄들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바, 각 죄책의 구성요건 등을 살핀 후 업무일지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죄책에 관한 법리적 검토

(1) 직권남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

²⁶

20) 뉴시스 기사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029_0010293796

21) 이 사건 업무일지의 ‘ ’ 이하 기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 대한민국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4/trip2014.php?srh\[smtt_view_mode\]=detail&srh\[smtt_seq\]=](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4/trip2014.php?srh[smtt_view_mode]=detail&srh[smtt_seq]=)

²⁷

23) JTBC 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49718

여진 상황에서 불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상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강요죄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무고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도4531 판결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국정원법 위반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에서 그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를 살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정보수집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라고 명확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일반적인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의 ‘기획’을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것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국가정보원의 설립 목적, 비공개적 업무 성격, 변화된 안보개념 등을 이유로 위 규정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언론 및 문화계 불법부당 통제

(1) KBS 인사에 관여하여 이사회 이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업무방해

(가) 이 사건 업무일지 관련 내용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2014. 6.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17차례에 걸쳐 한

국방송공사(이하 ‘KBS’ 라고 합니다) 관련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 2014. 6. 15.과 다음날인 16. ‘KBS 정기이사회-사장 임명 논의’, ‘KBS 상황 파악, 미래 직행’, ‘KBS 이길영 이사장’ 등 사장 공모절차 관련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6. 15.	6월 18(수) KBS 정기이사회, 사장임명논의(7/10까지는) -KBS 상황 파악, 미래 직행	박 대통령이 2014. 6. 10. 김환영 전 KBS 사장 해임안에 서명(증 제20호증 SBS 2014. 6 10. 자 기사출력물 ²⁴), KBS 이사회는 2014. 7. 9. 조대현 전 KBS 사장을 사장으로 내정(증 제21호증 연합뉴스 2014. 7. 9. 자 기사출력물 ²⁵)
6. 16.	KBS 이길영 이사장 선, 배후, 움직임수, 학교, 동기생	
6. 17.	KBS 노조 16개 직능단체 -사장선임 절차 제의 -공영방송 영 독 일 -수용 곤란	
6. 26.	KBS 추적 60분 천안함 관련 판결-항소	
7. 1.	KBS 사장 선출 관련	
7. 3.	KBS 6명 - 조대현 7	
7. 4.	KBS 이사 左派 이사 - 성향 확인 요 독버섯처럼자란 (DJ, 노무현 정부) 인사 공직·민간·언론 불문	
8. 28.	방심위. KBS보도(문창극) -전체 합의에 회부	이길영 전 KBS 이사장이 2014, 8, 27. 전격 사퇴하였고(증 제22호증 PD저널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 ²⁶) 이사회는 같은 해 8. 29. 그 자리에 이인호 현 KBS 이사장을 내정(증 제23호증 연합뉴스 2014. 8. 29. 자 기사출력물 ²⁷). KBS 이사회는 2015. 10. 26. 고대영 현
9. 3.	長 서울신문(정부2大 주주) 이인호 위원장 임명내정	
9. 5.	長 <u>국가정체성, 헌법가치 수호 노력 →정책집행 인사관리를 통하여</u> <u>일선 행태 - 반체제 집요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의지, 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년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 심의 관련</u>	

		KBS 사장을 사장으로 선출(증 제24호증 SBS 2015. 10. 26. 자 기사출력물 ²⁸⁾) -> KBS 보도의 친정부성, 편파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됨
--	--	--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파동으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이후 새 노조를 비롯한 KBS 내부 구성원들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뽑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같은 해 6. 30. 열린 KBS 이사회에서 다수 이사(여권 추천)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같은 해 6. 17. 자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이 제안을 언급하며 “수용 불가, 방통위원장과 상의”라고 적은 기록이 있는바, 청와대가 사전에 ‘수용 곤란’ 방침을 정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관철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증 제25호증 한겨레 2016. 11. 18. 자 기사출력물²⁹⁾).

또한 청와대는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보름 전(같은 해 6. 15.)부터 KBS 사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하여 특히 같은 해 6. 16. 자 기재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은 KBS 사장 선임을 피고발인 김기춘의 지시로 청와대 홍보미래전략수석이 주도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 2. 자 KBS 이사회에서 30명의 사장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된 다음날, 청와대는 조대현 후보가 우세하다는 정보를 입수(같은 해 7. 3. 자 기재 : KBS 6명 - 조대현 7)했고, 우파 이사들의 성향 파악(같은 해 7. 4. 자 기재 : KBS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에 나섰고, 야당 추천 4명과 여당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24)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31983

25)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05433>

26) PD 저널 뉴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59>

27)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94904>

28) KBS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71005&ref=A>

29) 한겨레 기사 <http://v.media.daum.net/v/20161117185606648>

에서 조 후보에게 표를 준 ‘이탈자’ 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11. 자 기재에는 ‘이탈자’ 를 지칭하는 듯한 ‘면중복배’ 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청와대가 KBS의 권력 비판 보도와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라고 합니다)의 제재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던 정황도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발언 보도’ 입니다. 같은 해 7. 2. 자 기사를 보면, “문창극 KBS 보도 - 중징계 - 방심위”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전날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특별위원회가 이 보도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낸 것에 대하여 이 상황을 공유하거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증 제26호증 한겨레 2014. 7. 1. 자 기사출력물³⁰). 또한 방심위가 이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날인 같은 해 8. 28. 자에는 “방심위, KBS 보도(문창극)-전체회의에 회부” 란 기록이, 전체회의에서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내린 다음날인 같은 해 9. 5. 자에는 “방심위, 문창극 관련 지도”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증 제27호증 뉴스1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³¹, 증 제28호증 한겨레 2014. 9. 4. 자 기사출력물³²). 그리고 같은 날짜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듯, 김기춘 비서실장을 가리키는 듯한 “長” 이란 글자 옆에, “국가 정체성, 헌법 가치 수호 노력 → 정책 집행, 인사 관리를 통하여 / 일선 행태-반체제 집요 투쟁-미온, 소극적 / 강한 의지, 열정 대처-체제 수호 難 → 유념 /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심의 관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피고발인 김기춘의 이러한 취지의 지시나 당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초기부터 강조해 온 것이었습니다. 2014. 6. 14. 자 업무일지 기재 참고)

이와 관련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발언 보도’ 는 애초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예측이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보다 약한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던 것

30)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45063.html>

31) 뉴스1 기사 <http://news1.kr/articles/?1833540>

32)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54347.html>

인데, 청와대에서 이를 사례로 들며 비판 세력과 언론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논의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심위가 ‘천안함 사건’을 다룬 KBS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중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같은 해 6. 26. 자 기재 참조)하는 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 특히 피고발인 김기춘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낱낱이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증 제29호증 PD저널 2014. 7. 8. 자 기사출력물33).

(나) 구체적인 혐의

KBS 인사권 행사를 규율하는 방송법 제46조 제4항, 제49조 제1항 제7호, 제5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이사장 호선 및 사장의 임명을 위한 심의·의결, 제청이 이사회의 법률상 권리행사이자 업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

-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49조(이사회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제50조(집행기관)

- ②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28.>

그런데 이 사건 업무일지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김기춘 등이 KBS 이사회의 조대현 전 KBS 사장 내정에 반발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KBS 사장 및 이사장 선임의 전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KBS 이사의 정치성향 확인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33) PD 저널 기사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84>

또한 위 내용에 따르면 방심위의 징계결정이나 추적 60분 관련 항소 여부결정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KBS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행해져야 하고, 그러한 위법부당한 개입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피고발인들의 행동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동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 동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2) 홍성담 그림 게시 관련 부당 방해

(가) 업무일지 관련 내용

박 대통령을 피고발인 김기춘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한 ‘세월오월’을 그려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한 홍성담 작가(이하 ‘홍성담’이라고 합니다)과 관련하여, 광주시(시장 윤상현)는 2014. 8. 6. 홍성담에게 결개그림을 수정하지 않으면 게시를 불허하겠다고 압력을 가하였고, 이어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2014. 8. 8. 홍성담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고, 광주시는 같은 날 위 그림을 이유로 홍성담의 행사·전시를 무산시켰습니다(증 제30호증 뉴스1 2014. 8. 6. 자 기사출력물³⁴), 증 제31호증 연합뉴스 2014. 8. 8. 자 기사출력물³⁵), 증 제32호증 뉴스시스 2014. 8. 8. 자 기사출력물³⁶).

그런데 이 사건 업무일지 2014. 8. 7. 자에는 피고발인 김기춘이 우병우팀 및 애국단체를 통하여 홍성담을 고발케 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위 그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 2. 자

34) 뉴스1 기사 <http://news1.kr/articles/?1803375>

35)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58569>

36)뉴스시스 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08_0013098142&cID=10201&pID=10200

메모에는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노골적 지시 사항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8. 7.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 단체는 2014. 8. 8. 홍성담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8. 8.	4.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사이버예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광주 비엔날레 -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 -광주시장	광주시는 같은 날 전시 유보 결정.
8. 15.	광주비엔날레 - 작가 13명 홍성담 관련 사보타지 위협	

(나) 구체적인 혐의

위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김기춘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우병우팀 및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광주시에게 홍성담 공격방안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우병우팀 및 보수단체, 광주시가 지시사항을 성실이 이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광주시장 등 행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보수단체의 형사고발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홍성담으로 하여금 작품 수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인 예술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물론 동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다이빙벨’ 상영 탄압

(가) 업무일지 관련 내용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2014. 9. 중순경 열린 부산국제영화제(PIFF)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다이빙벨’ 을 상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며 상영을 제지하려고 하였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하 ‘이 전 집행위원장’ 이라고 합니다)이 상영을 강행하자, 부산시는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사퇴 권고를 하였습니다(증 제33호증 한겨레 2014. 9. 24. 자 기사출력물³⁷⁾, 증 제34호증 TV리포트 2015. 1. 24. 자 기사출력물³⁸⁾). 또한 감사원은 부산국제영화제 등 전국의 주요 대표 문화행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전 집행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부산시에 권고하였는바, 부산시는 2015. 12. 11.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10. 26.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증 제35호증 KNN 2015. 11. 23. 자 기사출력물³⁹⁾, 증 제36호증 국제신문 2015. 12. 14. 자 기사출력물⁴⁰⁾, 증 제37호증 SBS 2016. 10. 26. 자 기사출력물⁴¹⁾).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중)는 2014. 8. 9. 보도의 잘못을 이유로 손석희 앵커를 중징계하고, 같은 해 9. 18.가 JT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증 제38호증 브레이크뉴스 2014. 8. 9. 자 기사출력물⁴²⁾, 증 제39호증 미디어오늘 2014. 8. 9. 자 기사출력물⁴³⁾).

그런데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피고발인 김기춘 등 청와대에서 위와 같은 부당한 다이빙벨 탄압을 직접적으로 지시했음을 추단케 하는 기재내용들이 아래와

37)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6764.html

38) TV리포트 기사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644063>

39) KNN 뉴스 기사 <http://www.knn.co.kr/71986>

40) 국제신문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215.33001222504>

41)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55938&plink=ORI&cooper=NAVER

42) 브레이크뉴스 기사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24990§ion=sc4

43) 미디어 오늘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64#csidx51bf40a33e546eb87b34fe3eaa38566>

같이 존재합니다.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9. 3.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사건(업무방해)- 정부, 교문	서병수 부산시장이 2014. 9. 중순경 부산국제영화제(PIFF)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이 부적절하다며 상영 제지,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사퇴 권고, 부산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 방심위는 2014. 8. 9. 손석희 앵커를 중징계, 같은 해 9. 18. JTBC의 재심 청구는 기각됨.
9. 5.	다이빙벨-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정부)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출품	
9. 6.	다이빙벨 - 다큐제작·방형 - 餘他 罪責?	
10. 2.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다이빙벨, 파주, 김현.	
10. 22.	다이빙벨 상영 - 대관료등 자금원 추적 - 실체 폭로	

(나) 구체적인 혐의

위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김기춘 등은 청와대 고위공무원이 갖는 지위와 위세를 바탕으로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차단하도록 모의하고 계획이 불발되자 부산시장을 통해 이 전 집행위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 김기춘 등의 행태는 헌법상 기본권인 예술표현의 자유에 반하여 ‘다이빙벨’ 제작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행사는 물론 이 전 집행위원장 등 상영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물론 동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4) 세월호 보도통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16. 6. 31.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전 대통령비

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하 ‘이정현’ 이라고 합니다)은 “방송이 지금 해경을 밝아놓으면 어떻게 하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녹음 좀 한 번 더 해달라” 며 보도를 수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증 제40호증 한겨레 2016. 7. 4. 자 기사출력물44). 그런데 이 사건 업무일지를 통하여 드러난 피고발인 김기춘의 사회전방위적인 탄압 및 공작기획에 비추어, 이정현의 홍보수석으로서의 위 보도통제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피고발인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한바, 이정현의 보도통제행위에 피고발인 김기춘이 어떤 식으로 관여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 언론에 대한 사찰·공작

(1) 업무일지 관련 내용

(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과 응징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찰과 공작

2014. 7. 2. 자 업무일지에는 “장(長)” “2. 언론환경 악화 - 허위, 왜곡 보도”. “정부신뢰, 권위추락 - 청와대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설 → 대응 수단 강구, 대처”, “종편”, “상응한 불이익 집요함” 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7. 3. 자 업무일지에는 “(2) 요즈음 국정운영을 둘러싼 언론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음. 특히 부정확한 보도, 악의적인 보도, 허위 왜곡보도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청와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며 비판하는 일이 만연함”, “허무맹랑하고 불합리한 일방적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됨. 반드시 정정보도, 언론중쟁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대응할 것(金수석)” 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44)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50411.html>

청와대가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 등을 통해 언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언론의 비판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하고,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이 비판언론에 대해 ‘응징’ 등을 표현을 쓰며 기자의 국외 추방, 세무조사 등 보복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세계일보 공격 관련

세계일보는 2014. 11. 28.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정윤희 문건’을 공개했습니다(증 제41호증 세계일보 2014. 11. 28. 자 기사출력물45).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증 제42호증 KBS 2014. 12. 2. 자 기사출력물46). 이에 검찰은 2014. 12. 3. 문건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5. 1. 5. 대통령기록물반출 혐의로 조용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증 제43호증 매일경제 2014. 12. 3. 자 기사출력물47). 그 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제1, 2 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피고발인 김기춘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위 보도를 한 세계일보에 대하여 압수·수색, 세무조사, 가판 정기구독 판매망 파악 등 노골적으로 공격 방안을 논의하고 지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직접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등의 이름도 있어 민간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및 사찰 역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증 제44호증 동아일보 2015. 1. 22. 자 기사출력물48).

45) 세계일보 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1/27/20141127005381.html?OutUrl=naver>

46)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75146>

47) 매일경제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88203>

48)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행되지 못했으나 세계일보를 운영하는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동아일보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50122/69215136/1>).

특히 조한규 당시 세계일보 사장은 2016. 12. 15.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서, 이 사건 업무일지의 기재대로 청와대 홍보수석 라인이 세계일보와 접촉했었고, 차은택, 최순실이 추천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라인과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통일교 재단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조 사장을 해임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증 제45호증 스포츠경향 2016. 12. 15. 자 기사출력물⁴⁹⁾).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11. 25.	세계일보 보도관련 -타사 보도 관련 조치 필요. 일 단 정정보도 청구 검토	세계일보는 2014. 11. 28. 정윤희의 국정농 단 의혹을 제기, 검찰 은 2014. 12. 3.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 경정을 압수·수색,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6. 12. 15. 국회 4차 청문회 에서 외압이 있었다 고 증언.
11. 26.	세계일보 세무조사 중, 세계일보 보도 관련 <박관천>에 대한 조치 방향 - 처우 방향, 연구, 형사, 징계는 입증 곤란. 좌천, 승진 가능보직 선정 확인, 자기변명 - 권오창 - 문제 대목 발취 북핵 비판, 한미동맹 지지 - 글 쓴 것 찾을 것 서면으로 해명 - 지지할 자료 첨부. 국가정체성, 領 大북관(국정철학) - 본인 스탠스 소신인 여부 (교육정책:소수자 ↔수월성)	
11. 28.	세계일보 공격방안	
12. 1.	압수수색 장소 - 세계일보사. 국가기록원	
12. 2.	(조선보도 관련) 만난적 없다 지난 1년 6개월간 2번 통화한 듯 - 기억 - - 28일 세계일보 이후 2차례 항의전화 - 3. 23자 시사저널 미행 보도 '경거망동 말라' 언 領 언짚아 함. 4.11. 전화	

49) 스포츠경향 기사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12151029003&sec_id=560901&pt=nv

(다) 일요신문과 시사저널의 ‘만만회’ 보도에 대한 응징

2014. 7. 17. 자 업무일지에는 “領 3. 시사저널, 일요신문 →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부,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 “만만회 告發. 트위터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 를 비선실세라 공개하여 과문이 일던 중이었는데,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 수석회의 석상에서 피고발인 김기춘이 구체적으로 시사저널, 일요신문을 특정하여 발본색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본때를 보일 것을 지시하고 정부, 홍보수석실 등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증 제46호증 경향신문 2014. 6. 25. 자 기사출력물50).

또한 같은 해 8. 25. 자 업무일지에는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 국정감사 일정 변경 관련” 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검찰은 같은 해 8. 28. 박지원 의원을 만만회 발언을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증 제47호증 연합뉴스 2014. 8. 29. 자 기사출력물51).

(라)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보도와 산케이 지국장 기소공작

1) 특정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處理” 지시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8. 7. 자 업무일지에 “장(長)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산케이

50)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51035491&code=910100

51)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93238>

있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處斷토록. 정보수집 경찰·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 10. 3. 자 업무일지에 “산케이 處理”

○ 10. 5. 자 업무일지에 “법무부 장관, -산케이 지국장 정상참작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 집행은 불가, -동경 특파원 천황 모독 경우 원칙대로 처리”

○ 10. 6. 자 업무일지에 “산케이 처리 후 후속대비, -이슈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일 정부 반전기도 예상, -언론사회 반발, -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說明,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단체 說明-論理(외교), -법과 원칙<언론자유, 이 이슈 외의 다른 이슈와 묶어서 보도 예상. 언론단체 성명(문체), -불가피성 설명, 주요 공관에 설명, 언론단체 설명(외교수석?), -당사의 태도 설명 과장 최소화”

2014. 8. 3. 일본 산케이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칼럼이 나온 후 청와대가 산케이에 대해 ‘응징’, ‘處斷’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형사 처벌과 언론 플레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8. 7. 가토 타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은 같은 해 8. 26.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증 제48호 증 뉴스1 2014. 8. 7. 자 기사출력물⁵²), 증 제49호증 MBN 2014. 8. 26. 자 기사출력물⁵³).

2) 세월호 7시간 보도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

2014. 8. 9. 자 업무일지에는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산케이 특파원 交替, 출입국 VISA 담당관“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8. 10. 자 업무일지에는 “산케이 -대통령 계셨고, 불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경호관 1명 지명, -자국민

52) 뉴스1 기사 <http://news1.kr/articles/?1805387>

53) MBN 기사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78245>

관심 표명, 외교문제 X. 특정기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언론에 대한 대응지침을 내리면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등의 평가를 하고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사생활”,과 “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는 등이 적정한 대응조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당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응 지침이 되었습니다(증 제50호증한겨레 2014. 7. 14. 자 기사출력물54).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7. 18.	長 4/16동선, 위치말씀-답변서 작성-문언 국가 원수, 경호신경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8. 5.	산케이 관련 보도 → 즉각적인 조치할 것.	일본 산케이 신문이 2014. 8. 3.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칼럼
8. 9.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8. 10.	산케이-대통령 계셨고, 온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54) 피고발인 김기춘은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부터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동선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사생활의 문제라고 반복하여 주장하여왔습니다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46811.html#csidx3c3e4aed8112918b6828df28a6698b4>).

	<p><경호관>1명 지명.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X. 특정기자의 범 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 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p>	
8. 14	<p>長 KBS,VIP행적보도</p>	
8. 20.	<p>김경희,김신호-敎차관 産經(산케이)1)위법성2)언론의자유3)조선(?) 朝日-좌우(국내) 주한외신기자클럽-연판장IPI 外장관,문체차관회의주재.정부체면고려대응. 과거사례조사요책</p>	
8. 24.	<p>(형사절차관련프린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93조(형사절차와의관계)검토흔적 가토다쓰야 2010.10.31입국(1년)~2011.10(1차) 2013(2차)체류기간 연장 2년씩.--2015.10.31 정윤희 전실장, 관련 보도-국민</p>	
8. 25.	<p>가토·박지원 처리 연계-국정감사 일정변경 관 련</p>	
8. 27.	<p>산케이처리-검찰과 의논은 곤란-관계기간 협의 로 처리</p>	
8. 29.	<p>산케이처리方案논의-관계부처</p>	
9. 2.	<p>산케이 사건-외무 법무 논의</p>	
9. 18.	<p>長 회사차원 사과+정정보도, 국가간 문제, 재 발 약속 陳謝, 언론탄압 비판, 7시간 의혹에 대한 사법판단, 외, 홍보, 변호인</p>	
9. 22.	<p>長 산케이 귀국 후 보고</p>	
9. 23.	<p>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사이버수사팀)</p>	
9. 29.	<p>산케이 지국장 출국정지 일자(8.27→10.5)</p>	
10. 5.	<p>법무부장관 - 산케이 지국장 - 정상참작 사유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집행은 불가. 동경 아 특과원. 천황 모욕 경우. 원칙대 로 처리.</p>	

10. 6.	<p>領 산케이처리 후 후속대비 -issue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선점. 일정부 반전 기도예상. 언론사의 반발-국내외.기소.일관된 논리로설명.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 단체 설명.-논리.(외교)</p>	
10. 9.	<p>산케이. 표현의 자유 운운 한계가 있다는 해 명. 필요시 번역. → 사후홍보전 충실히 하 여 불법에 대한 대응임은 당당히 밝혀야. →사 실확인, 조선일보와의 차이. 개전의 정. 長 산케이 관련 외신 보도 문의. 상세히 설명. 오보 아닌 악의적 명예훼손. 대내외 홍보토 록.</p>	
10. 10.	<p>산케이 변호인 - 박영 고소 변 → 국내정치 전선형성(?) →일본 반응. 격양상태. 냉정 요 청. 인터넷 긍정 70%. 長 경향보도(산케이) 소회 토론</p>	
10. 28.	<p>長7시간전면복원-정무→김재원의원:보도자료배 포 메이저언론상대설득,홍보</p>	
11. 11.	<p>산케이 11/13→11/27 준비기일 연기</p>	
2015. 1. 7.	<p>한겨레 정정보도 1심 기각 - 1.13 항소 VIP 팽목항 위로장면 연출</p>	

(2) 구체적인 혐의

위 각 기재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은 대통령비서실직원 및 검찰 등을 통하여 언론의 비판보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산케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 국정감사 일정 조절”을 시도하고, “검찰과 의논은 곤란, 관계기관 협의로 처리”라고 되어 있어 검찰에 관계기관 협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위력을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사건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즉 국회와 검찰 등에 산케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에 대해 세무조사가 행해지게 하고 통일교 재단을 통해 조한규 사장을 해임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짐에 따라 세계일보가 제기한 국정농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와 같은 국정농단이 실제 이루어져왔음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주도하여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 무고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김기춘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통하여 민주 사회의 근간인 언론의 중립성 및 공정성, 보도의 자유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바, 그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모두 공개하는 대상인바, 피고발인 김기춘 등을 비롯한 청와대의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 등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대응의 적절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피고발인 김기춘 등 청와대에서 7시간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무효등) 관련하여

여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및 국가기밀유출 수사과정에서도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사후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이미 청와대에서 7시간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은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바,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 세월호 관련 공작

(1) 세월호특별법 관련

(가) 업무일지 관련 내용

새누리당은 2014. 7.경부터 8.경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인정하는 세월호특별법 조항 등에 대해 다수 헌법학자들이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세월호특별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비망록을 보면 새누리당의 그러한 반대가 당 차원의 반대가 아닌 청와대 입장을 전달받아 충실히 행해진 정략적 반대였음을 알 수 있고, 더하여 2014. 7.경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특별법 반대 카톡 유포 논란이 있었는데 피고발인 김기춘은 2014. 8. 31.경 그 내용에 대해 ‘건전한’ 카톡이라고 칭하며 유포 증가 추세에 대해 ‘좌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 고 하며 ‘활용’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이나 그에 따라 설치되는 조사위원회는 대형재난이 반복되어 온 우리 사회에서 재난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담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일지에서는 ‘국난 초래,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욕구’와 관련된 조직으로 폄하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되는 언론 기고가 이뤄

지도록 조치를 시도하거나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어버이연합에서는 무기명으로 문화일보에 특별법을 공격하는 광고까지 신기도 했습니다(증 제51호증 미디어스 2014. 7. 28. 자 기사출력물55). 또한 같은 해 9. 12. 자 기재에는 그 무렵 세월호특별법 반대운동을 열심히 수행하던 고엽제 전우회의 사무실 예산 지원과 관련한 기재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2014. 8. 1. 메모와 같이 ‘세월호에서 벗어나 원칙대로 경제살리기’가 거론된 이후 같은 해 8. 5.경부터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벗어나 경제살리기’로 전환하자는 입장이 강해지고 언론에 같은 내용이 잇달아 보도되었습니다(증 제52호증 뉴스1 2014. 8. 5. 자 기사출력물56).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6. 14.	세월호 이후 국정과제-정리. 새장관 임명 후정리, 추진	
6. 15.	국정조사(세월호) →본인도 틈틈이 공부중. 유비무환. 수석, 비서관 -청와대가 단죄요청하다 사태 확대 정치적 책임은 있으나 현장, 재난본부장, 중대본, 안행부장관, 총리. 진평-사기	
7. 2.	세월호 특조 기관보고시 내용 → 점검 요	
7. 3.	세월호 국조-김광진의원 세월호특별법안	
7. 5.	해경, 현장조치 소홀 비난→해체 안전업무의 전문성 부족 발전적 해체. 병력은 증강. 해경의 자존심배려	
7. 8.	長 세월호참사원인 선장선원의 배반적 유기행위	

55) 미디어스 기사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25>

56) 뉴스1 기사 <http://news1.kr/articles/?1801567>

	<p>해경 초동 구조 작전의 실패 유병언 일당 탐욕(배수선,과적) <u>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X</u> 정부가 변명 X, 실패는 똑바로 파악</p>	
7. 11.	長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7. 13.	長 세월호 특별법 - 국난초래-법무부 당과 협조 강화	
7. 17.	<p>長 1.세월호 후속 법안, 정부조직법안-긴밀 협조-공유강화 소관부처법안-정례적정책협의 2.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 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p>	
7. 19.	<p>세월호수사성과- 종합자료-제공-당대표, 법사위, 세월호TF, 김재원 수석, 정무. 조대현 검증-의혹91년도</p>	
7. 21.	<p>검찰총장,법무장관-기고-세월호특별법안 관련 김철수 교수(법무부 교섭), 차대근, 허용, 제성호</p>	
8. 1.	<p>세월호에서벗어나원칙제대로.경제살리기대감 →보도 세월호 구상권 확보 철저 - 추진상황 점검 TF.</p>	<p>이후 실제 2014. 7. 28.경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몇 몇 사설이 게재되고 문화일보에는 광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특별법에 대한 허위 공격 내용이 광고로 게재됨. 이후 광고주가 어버이연합으로 밝혀짐. 또한 같은 해 8. 1. 메모와 같이 ‘세월호에서 벗어나 ..경제살리기’ 가 거론된 이후 같은 해 8. 5. 경부터 새누리당에서는</p>

		‘세월호 벗어나 경제살리기’로 전환하자는 입장이 강해지고 언론에 같은 내용이 보도됨.
8. 3.	세월호특별법 상설특검 추천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실정법 활용해야.	
8. 6.	곽노현 상대 고발(세월호 국정원 관리 운운)	
8. 8.	長 1.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 상설 특검 활용. 특검추천위원회(7인).건전한특검임명-준비토록. pool.평소에 변호사 리스트, 합동추진, 위원회 투입.	
8. 12.	논조point조정요 세월호 파장-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기 때문임.학교안전. 백화점 비상구(소방) .다중이용안전 사고유의, 대비.	
8. 18.	안행부 장관관이 국가안전처 취임권. 해경 해상사고 대비가 더 철저한 것인지. 사전적 지휘.감독. 세월호 관련 수사 상황 #표 총 164명 기소(98명 구속,66명 불구속) 총 274명 기소(144명 구속,130명 불구속)(9/16화)	
8. 25.	頌 세월호 사고관련 후속점검·제재에 관심 단속방안	
8. 26.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구성(법안제6조)> 위원회는 상심위원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여야각5명씩10명(상임위원여야각1명씩2명) -대법원장2명(상임위원1명) -대한변협2명(상임위원1명) -피해자회의3명(상임위원1명)	

8. 30.	세월호 원인은 어느정도 규명 재발 방지책 정리. 감사원 재발 방지책 입수, 검찰 재방 방지책 등 각 기관별 방책 종합정리.	
8. 31.	<u>카톡 등 전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 좌파들 위기의식 →活用토록</u>	
9. 6.	長 [해경의날]관련. 무력 보유집단이 집단 의사 표현의 곤란 김석진 해경청장 주무장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대통령 선물, 명단 확정후	
9. 14.	전교조 계기수업(세월호)-左派 계기 수업자료 개발 세월호 상황보고(해수)-균형되게 쓰도록	
9. 18.	계기수업-법률 자문, 학교장·교사징계기준	
9. 27.	세월호 - 출석, 자료제출, 불응시 벌칙	
10. 1.	세월호특별법 조항별 검토의견 제시(법무) --> 독소조항, 벌칙, 역대 위원회와의 비교. 문제점. 국회에 pass토록 할 것. 長세월호특별법 조문화. 과거사례 검토 올바른 입법되도록 영장주의. 과도한 벌칙. 유무 검토, 여당 pass.	
10. 2.	초동-해임등48명.안전점검-10명 안정운항-16명,재난대응체계-20 총94명(27명).해경,청장,차장,서해청장,경비국장, 인천항만청장2명.해양실장,국토부물류기획관 長세월호특별법-수사,감사-진상위할일. 진상규명사실을대응여론전.전례없는권한부여조항밝혀조문화에참여토록.	
10. 11.	세월호특별법 예외적인 법, 보상 형평성, 과거	

	-미래 선례- 치밀한 검토	
10. 16.	국감Q&A-읽으면되는문서,+보충자료 세월호, 인사	
10. 19.	長국감준비, 세월호, 인사	
10. 27.	11/1 세월호 200일 - 전교조 집중주간 운영 → 위법사항 고발방침 長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11. 6.	세월호법 관련 하태경 의원 - 주장	
11. 21.	長 안전처장 세월호 공부 후 청문회 출	
11. 24.	고일선전국장(국정원) 세월호사고종합수사결과(10/6)	
11. 28.	세월호진상조사위17명 -부위원장겸사무총장(정치지망생好) 세계일보공격방안 ② 석동현 ① 조대환	
12. 19.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大法院-法務部협조	
12. 21.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大法院(法務)	
2015. 1. 4.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명단리스트(권영빈에 밀줄쳐 있음)	

(나) 구체적인 혐의

이 사건 업무일지 중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발인들은 세월호특별법을 폄하하며 법무부를 통해 헌법학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대로 사실을 기고하는 협조를 받아보라고 지시하고, 보수단체 등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반대운동 및 카카오톡 유포를 활용하라고 하는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에 과도한 예산 지원을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인양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해수부에 부당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행태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한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세월호 피해자들 관련

(가) 업무일지 관련 내용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가 2014. 6.경부터 단식을 시작하고 40일 넘게 지속하자,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2014. 8.말경 일제히 문재인 의원 등의 단식 동참에 대한 비난 보도를 시작하였습니다(증 제53호증 동아일보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57). 또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짐과 더불어 보수단체들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기도 하였습니다(증 제54호증 노컷뉴스 2014. 8. 28. 자 기사출력물58). 또한 단식 중인 김영오의 과거 발언 및 행적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시도가 있었습니다(증 제55호증 연합뉴스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59).

그런데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피고발인들이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부당하게 언론을 지도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8. 23. 자, “자살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 기재). 뿐만 아니라 당시 “유가족들도 어느 선에서는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진다” 고 말해 논란이 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자세를 치하하며, 타종교지도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종용하라는 지시 역시 기재되어 있습니다(증 제56호증 헤럴드경제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60). 또한 2014. 9. 17.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단순 민간에서의 폭

57) 동아일보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40827/66029503/1>

58) 노컷뉴스 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81303>

59)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90499>

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휘권 확립까지 거론 하였습니다(증 제57호증 채널A 2014. 9. 17. 자 기사출력물61). 그리고 세월호 일반인 피해자들이 같은 해 9. 유경근 세월호 전 대변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단순 폭행치상 사건으로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 아님에도 피고발인은 같은 해 9. 30.경 일반인 피해자들이 “유경근 대변인 고소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보고를 받는 등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이 시점까지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증 제58호증 연합뉴스 2014. 9. 30. 자 기사출력물62).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6. 15.	단원고 유가족 : 경기교육감 면담 요구사항 제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당시 일제히 문재인 의원의 단식 동참에 대한 비난 보도를 시작.
6. 16.	세월호 : 통화내역 제출 요구 유가족 과도한 요구 세월호 유가족 요구 무리. 생존교사 상태 탈출 당시 상황 증언 요구. 교사 2명 사의	
6. 17.	잠수사 - 98만원	또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6. 21.	단원고25일 등교 종교 단체 6/23(월) 시국선언	“유가족들도 어느 선에서는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진다”고 말해 논란.
7. 4.	해경,진상 국조특위,유가족사청자	한편, 이 시기에는 보수단체들의 세월호특별법 반대 집회가 빈번하게
7. 20.	長 검찰 세월호 사건 관계자 구속, 입건, 철저 수사 중인데도 유족은 수사권 부여 주장 -결과 방지, 의지 등을 소상히 알려져 국민 납득 요망. 유병언 재청구 앞서서 중간 발표	

6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27000027&md=20140830005750_BL

61) 채널A 뉴스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917/66465679/1>

62)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40930077100065>

8. 22.	長 교황 방한에 언론 과잉보도- 교황 갈등 유발 x,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편향성 노출, 세월호 유가족(학생유가족)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합리적. 이들 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중화.	열립. 또한 단식 중인 김영오의 과거 발 언 및 행적에 대 한 부정적인 내용 을 담은 영상 등 이 인터넷에 공개 되는 등,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악 의적인 명예훼손 시도.	
8. 23.	자살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		
8. 26.	조선일보 보도 -김영오 관련 염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 종교지도자도 취하도록 노력		
8. 29.	김영오 사찰 의혹 1. 병원 입원 병원장 만나 문의 -사찰 2. 정읍에서의 개인정보 등 사찰 1. 8/22입원 8/20 동대문구 담당 IO동부병원 통상적 대 화 -병원장 이보라 과장이 주치의라 다행이다. 현실 참여. 집무태 도 훌륭 죽으면 더 문제. 8/22 호송. 뉴스보고 병원장에 전화 용태문의 맥박, 혈당 낮다. 휴식. 치료 생명지장 無 2. 8/22 입원일 정읍 6급공무원 인터넷검색 김영오 고향 정읍이라는 사실. 6급 -이평면사무소 전화 김영오에 대하여 문의. 모친○, 학교x, 명절에만○. 6급 이 정읍시장에 보고.(담당공무원) 이평면 직원이 김영오 모→아들→言論		
8. 31.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 좌파들 위기의 식→활용토록(8.31.)		
9. 1.	<정당해산 및 세월호유족측 변호사14.8.30(토)민정수석 실(민정)> 세월호 유가족측 주요 변호사 1.권영국 2.박주민 3.김용민 4.오영중		
9. 5.	팽목항 잔류 실종자 가족 감정 기복 불상사 우려 위무, 치료-安定 회복토록 부담 우려되니 유관부처 관심 가지고 대처		당시 유가족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단순 민간에서의 폭 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에서 지대한 관심
9. 17.	김현 의원 폭행건 -세월호 유족 선동·조종. 김병권, 김형기 한상철, 피(의자?) 이경찬 계기 수업 세월호 교육부, 교장 허가, 교사, 교장에 대		

	한 조치	을 가지고 지휘권 확립까지 거론함. 또한 세월호 일반인 피해자들이 9. 유경근 세월호 전대변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큰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 아님에도 9. 30.경 일반인 피해자들이 고발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보고를 받는 등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이 시점까지도 진행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함.
9. 20.	유가족 폭행사건-철저지휘-치아 파손	
9. 21.	세월호 유가족 폭행 - 월요일 지휘-기민하게 일하도록 (지휘권 확립토록)	
9. 22.	5.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김현 의원)	
9. 30.	유경근 대변인 고소 예정	
10. 2.	세월호후속-유가족 분리 용어 사용. 독소조항 정리(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	
10. 3.	長운영위국감-세월호국감-대응 연구. 준비.	
10. 5.	책임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분되도록(세월호 보도자료)	
10. 7.	김현의원사건송치시기-국감일자	

(나) 구체적인 혐의

세월호특별법 관련 안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 집회를 개최하고 큰 이슈가 되자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기타 유가족을 분리하여 기타 유가족 편을 들듯이 태도를 취하였는데 그 와중에 유가족 폭행사건이 터지자 피고발인 김기춘은 단순 폭행치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휘, 기민하게 일할 것’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지휘권⁶³⁾이 없는 청와대에서 민간인들 사이의 폭행 사건에 위와 같은 관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63) 수사지휘권이란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한바, 이는 법무부 장관 고유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가족 김영오가 단식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 야당 정치인들이 그것을 지지하는데 대해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편향성 노출, 자살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 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실제 언론과 종교계 인사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어떤 보도지시나 개입을 하였는지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과 관련하여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 내용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같은 해 9. 30. 자로 유경근 대변인에 대한 고소가 ‘예정’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부분은 큰 이슈가 된 부분도 아니었는데 일반인 유족들이 같은 해 9. 30.경 유경근 대변인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 시점까지도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월호 특조위의 3차 청문회에서 해경 보고서를 통해 4. 17.부터 상당 기간 진도 현장에 파견된 해경 정보관들이 광범위하게 피해자들을 사찰, 감시, 행동보고 등을 해 왔던 점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청와대에서 당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회적 이슈로 만든 유가족들을 압박하기 위해 일반인 유족 대표에게 유경근 대변인의 고발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증 제59호증 민중의 소리 2016. 9. 2. 자 기사출력물64).

특히 위 내용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측 주요 변호사들을 파악하고 민간인 사찰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는바, 실제 박주민 의원의 경우 2014. 10. 27.경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통보 등 5건의 통신자료 정보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세월호 유가족측 변호사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증 제60호증 민중의 소리 2014. 9. 2. 자 기사출력물65).

64)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65122.html>

65)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78934.html>

(3) 감사원 보고 관련

(가) 업무일지 관련 내용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6. 15.	감사원에는 해경 수사-구조상.*구조상해태자(엄별,인사).국정조사전 파악- 선제적 조치	
7. 9.	감사원 중간 보고 - 내용 인용 - 청와대 책임	
8. 31.	長 세월호 관련 감사원-권익위 향후 계획/검찰	
9. 1.	감사원장 보고-off the Record로 할 것	
9. 2.	頌감사원장 4.세월호사건-적폐가 인명 피해 초래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감사. 현장 위주 감사 잘못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각심	
9. 16.	세월호 감사원감사 결과-전원구조 발표 →감사원 발표 시기	
10. 8.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 미리 받아 검토 comment.	

(나) 구체적인 혐의

세월호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해경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해경 수사 관련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라’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감사원장으로부터 오프더레코드로 감사결과를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개입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

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2항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청와대 책임과 관련하여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감사원장, 세월호 사건 담당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업무일지 관련 내용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피고발인 김기춘이 대법관 임명부터 조직운영, 재판에 대한 압력까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4. 6.경 부터 7.경 작성된 기재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과 접촉 경과 등이 다수 적혀 있는데 이는 대법관 후보들을 피고발인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가 물색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은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개별 판사들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습니다.

(가) 법원 길들이기

2014. 9. 6. 자 업무일지에는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 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甲일시에만”, “입증의 정도. 문제 - 시대. 조건 변화”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 필요 → 국가적 행사 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제도를 통해 법원행정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법원의 숙원사업 이행을 연결고리로 법원을 길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국가안보 도그마를 통해 법원의 시국사건 재판에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국가적 행사 때마다 법원의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집시법위반 사건,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공안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도록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2016. 12. 15.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인 사용’ 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을 담은 2건의 사찰문건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증 제61호증 연합뉴스 2016. 12. 15. 자 기사출력물⁶⁶⁾). 그 문서는 양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증거” 라고 증언한바, 피고발인 김기춘은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까지도 지시·실행하였습니다.

(다) 박근혜 정권 실정과 관련된 사건에 비판적인 판사들 업무배제 시도

2014. 8. 29. 자 업무일지에는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경은 2014. 8. 22.경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판사는 해경 등 국가기관이 불법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국가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

66)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5/0200000000AKR20161215079451001.HTML?input=1195m>

데, 세월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선장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주요실정 중 하나인 세월호 사건에서의 국가 책임을 언급했던 것을 문제 삼은 위 이형주 판사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거나, 보수단체가 SNS 등을 통해 사퇴요구를 하도록 공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실제로 5일 후 한 보수단체는 이형주 판사의 법관 재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4. 9. 22. 자 업무일지에는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것으로, 그 이후인 2014. 12. 3. 대법원은 김동진 판사에 대해 2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대법원의 권한에까지 개입한 것입니다.

(라)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장청구 등에 활용

2014. 8. 23. 자 업무일지에는, “長 법원 양의원 영장기각. 믿을 수 있는 부장 OO”, 9. 4. 자 업무일지에, “법원 영장 - 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원 영장담당 판사들의 명단과 성향을 미리 파악한 뒤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한 영장청구 시 해당 판사의 성향을 고려하여 청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백남기 농민 사망 후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 보수단체, 보수인사를 통한 재판 영향력 행사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8. 8. 자 업무일지에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관련 기고문 등 법원 제출”
- 11. 25. 자 업무일지에 “長 현재 재판 - 여론전 활동방향 정립(시민단체 활용)”
- 11. 26. 자 업무일지에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 - 법무부와 협력”
- 12. 10. “바른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

위 업무일지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보수 변호사단체, 보수법학자, 보수단체 등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전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보수적인 법학자, 보수 변호사모임, 보수시민단체 등을 통해 칼럼 기고,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기고,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입니다.

(2) 구체적인 혐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응징, 보복 대상으로 낙인찍고 집요하게 추적하여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법원이 자신들의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인사의 사생활을 사찰하여 인사상 불이익 등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드러난 판사들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탄원서 제출, 고발이나 사퇴 압력 등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기춘은 직권을 남용하여, 보수단체, 보수 변호사단체들에게 대법원에 대한 탄원서 제출, 칼럼 기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

법원의 인사 권한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권력을 견제하여 전제권력의 출현을 막는 삼권분립의 원리나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훼손으로 헌법질서가 유린된 심각한 사항이므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1) 업무일지 관련 내용

(가) 국정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신원검증과 공직기강 사찰

2014. 6. 18. 자 업무일지에는 “(身元검증 - 장.차관, 공공기관장, 3급 국장(고공단) - 보안국) → 국내정보”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7. 16. 자 업무일지에는 “3. 공직기강. 검증. 군검증시 기무사 자료외 국정원 자료 제공되는데 국정원에서 요구 - 균형감 必要”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원검증, 공직기강 검증 시 국정원으로부터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과 국정원이 공공기관장, 3급 국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위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된 것인데, 이는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규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장.차관이나 3급 국장급 등에 대해 신원검증이나 공직기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활동이나 사생활 등을 몰래 사찰을 하여 이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권차원의 통제에 활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 정치인 사찰: 총리실 TF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정치인 비리 사찰 지시

2014. 7. 15. 자 업무일지에는 “領 2.총리실 TF -국정원, -정치인 비리 등 거악 척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비리를 캐내도록 하고, 거악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국정원법 위반이고 여전히 국정원이 공작정치에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점입니다.

(다)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국정원이 사찰하도록 청와대에서 지시

1) 경찰과 국정원 Team(우병우 팀)을 짜서 사찰하도록

2014. 8. 7. 자 업무일지에는 “長 神父 - 뒷조사, 경찰, 국정원이 Team 구성 → 6급 국장급”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8. 7. 자 업무일지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잇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구성토록”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구성하여 신부에 대한 뒷조사⁶⁷⁾를 하고 언론을 처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아예 List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경찰과 국정원이 사찰해야 할 대상들의 List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2) 국정원 내부의 업무분장까지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지시

2014. 9. 23. 자 업무일지에는 “추명호 : 국정원 6국장 → 8국장(수집), 2국장

67) 국정원이 神父를 사찰하는 것도 놀랍지만, 청와대가 “사찰”을 의미하는 “뒷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 7국(분석)”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추명호” 라는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6국장에서 8국장으로 수집업무를 2국장에서 7국장으로 분석업무를 맡기는 등 국정원의 국내 사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바, 국정원법 위반의 혐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도 사찰과 공작에 동원된 의혹

2014. 9. 30. 자 업무일지에는 “長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정보. 규제 기관 음지 조용히 일하며 성과 거양 → 언론에 정책방향 表明 경우 운용이 경직성, 도덕적 해이도 유발 가능 → 은밀히 작동토록 지도 ex) 국세청 今日 報道”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청와대가 사찰대상 언론이나 기업, 인물 등에 대한 공작에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의 규제기관들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정윤희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은밀히 작동토록 지도” 등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서 은밀히(몰래) 공작을 통해 반대자, 비판자 등을 억압하려 한 공작정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혐의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한정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및 민간인의 사찰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기춘은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가 아닌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및 민간

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였습니다(형법 제123조).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은 이와 동시에 국정원에 대한 지시를 통해 정치인 사찰 등으로 인한 정치관여 및 사찰 대상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라 피고발인 김기춘을 국정원법 제18조, 제19조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까지 문제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고인과 피고발인 김기춘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논의한 다양한 사항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각 기재일자와 객관적 상황이 대부분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되는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기재한 것일 수 있다는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문회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특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공작정치가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인은 민정수석이었고 '민정(民情)'은 백성의 뜻을 살핀다는 뜻이다. '민정을 살핀다'는 건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용어로, 말 그대로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일컫는 것인데, 피고발인 김기춘은 반헌법적이고 초월헌법적인 독재시대의 가치관을 국정철학으로 계속 강조하며 세월호 등에 대한 국민 여론과 민심 동향,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등을 일체 무시하며 오히려 세월호 피해자들을 분리시키고, 사찰하고, 언론보도와 감사원, 검찰을 통제하는 등으로 민정수석의 역할을 왜곡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되어 서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 검찰, 언론 등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인터넷이나 집회, 단체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정권의 일정한 성과를 포장하는데 국가의 입법, 행정작용, 사법작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은 현대 민주주

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축으로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작정치의 청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파헤쳐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다시는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바, 특검이 그 첫발을 엄중한 의지를 가지고 떼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 거 방 법

- | | |
|------------|-----------------------------|
| 1. 증 제1호증 | YTN 2016. 12. 7.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2호증 | 위키피디아 출력물 |
| 1. 증 제3호증 | 미디어오늘 2016. 12. 7.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4호증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출력물 |
| 1. 증 제5호증 | 한겨레 2014. 6. 19.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6호증 | 한겨레 2014. 6. 24.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7호증 | 아시아경제 2014. 7. 10.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8호증 | 서울신문 2014. 6. 18.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9호증 | 위클리 오늘 2014. 6. 22.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10호증 | 문화일보 2014. 7. 21.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11호증 | YTN 2014. 7. 27.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12호증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
| 1. 증 제13호증 | 논객넷 게시물 출력물 |
| 1. 증 제14호증 | 연합뉴스 2014. 9. 15.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15호증 | 연합뉴스 2014. 8. 22. 자 기사출력물 |

- 1. 증 제16호증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출력물
- 1. 증 제17호증 뉴시스 2014. 10. 29.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8호증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출력물
- 1. 증 제19호증 JTBC 2014. 11. 20.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0호증 SBS 2014. 6 10.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1호증 연합뉴스 2014. 7. 9.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2호증 PD저널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3호증 연합뉴스 2014. 8. 29.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4호증 SBS 2015. 10. 26.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5호증 한겨레 2016. 11. 18.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6호증 한겨레 2014. 7. 1.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7호증 뉴스1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8호증 한겨레 2014. 9. 4.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9호증 PD저널 2014. 7. 8.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0호증 뉴스1 2014. 8. 6.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1호증 연합뉴스 2014. 8. 8.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2호증 뉴시스 2014. 8. 8.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3호증 한겨레 2014. 9. 24.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4호증 TV리포트 2015. 1. 24.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5호증 KNN 2015. 11. 23.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6호증 국제신문 2015. 12. 14.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7호증 SBS 2016. 10. 26.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8호증 브레이크뉴스 2014. 8. 9.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39호증 미디어오늘 2014. 8. 9.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0호증 한겨레 2016. 7. 4.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1호증 세계일보 2014. 11. 28.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2호증 KBS 2014. 12. 2.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3호증 매일경제 2014. 12. 3.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4호증 동아일보 2015. 1. 22.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5호증 스포츠경향 2016. 12. 15.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6호증 경향신문 2014. 6. 25.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7호증 연합뉴스 2014. 8. 29.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8호증 뉴스1 2014. 8. 7.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9호증 MBN 2014. 8. 26.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0호증 한겨레 2014. 7. 14.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1호증 미디어스 2014. 7. 28.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2호증 뉴스1 2014. 8. 5.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3호증 동아일보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4호증 노컷뉴스 2014. 8. 28.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5호증 연합뉴스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6호증 헤럴드경제 2014. 8. 27.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7호증 채널A 2014. 9. 17.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8호증 연합뉴스 2014. 9. 30.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59호증 민중의 소리 2016. 9. 2.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60호증 민중의 소리 2014. 9. 2. 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61호증 연합뉴스 2016. 12. 15. 자 기사출력물

첨 부 서 류

- 1. 위 증거방법 각 1부

2016. 12. 28.

고발인 참여연대 외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귀중